

50%이상 100%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100%이상 200%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10}】
200%이상 500%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 이상	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25/100+(증가율-500/100)×5/1,000}】

## 【 6 】 양주군농어촌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4. 3. 3.

제출자 : 양주군수

## 제안이유

- 농어촌도로정비법 (법률 제4604호 93.12.27) 및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040호 93.12.3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농어촌도로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함.

## 주요골자

## 1. 점용료 산정기준 결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적용
- 점용료 산정기준표 - 별첨 -
- 점용료의 조정
  -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 및 부당이득 금의 산정한 금액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10% 이상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조정산식에 의하여 조정
- 점용료의 감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은 전액 면제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 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점용료는 50% 감면
  -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 및 군수가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 감면
- 도로점용후 허가취소 및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했을때 점용료 반환 조치
- 수수료 징수
-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내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징수

### 양주군 조례 제 호

#### 양주군농어촌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도로점용료 (이하 “점용료”라 한다) 부당 이득금,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18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부당이득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회계년도별로 산정한다.

제3조의2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

이득금의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1을 감면한다.

3.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내무부

령이 정하는바 및 군수가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률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④ 부당이득금액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⑤ (도로점용 공작물등의 이설비용의 부담) 법 제21조의 2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년도분은 허가 할때 그 이후에 년도분은 점용허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3.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 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부과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징수의 위임) 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표 (제3조 관련)

(금액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면적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것	전 주	1 개	600
	전주와 유사한것		900
	공 중 전 화		24,100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기타의 것	점용면적 1 m <sup>2</sup>	1년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하수도 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 및 통신시설관	직경 0.1m이하	길이 1m 1년	150
		직경 0.1m초과 0.2m이하		300
		직경 0.2m초과 0.4m이하		600
		직경 0.4m초과 0.6m이하		900
		직경 0.6m초과 0.8m이하		1,200
		직경 0.8m초과 1.0m이하		1,500
직경 1m초과	3,000			
기타의 관		직경 0.1m이하	길이 1m 1년	200
		직경 0.1m초과 0.2m이하		450
		직경 0.2m초과 0.4m이하		900
		직경 0.4m초과 0.6m이하		1,350
		직경 0.6m초과 0.8m이하		1,800
		직경 0.8m초과 1.0m이하		2,250
		직경 1m초과		4,5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 시설안내 표지, 현수막 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	일시 설치한것 (1월미만점용)	표시면적 $1\text{m}^2$	1 일	100
		기 타	"	1 년	15,000
	사 설 안 내 표 시	1 개	1 년		12,500
	현 수 막	제사나종교행 사의용도로일 시설치한것	점용면적 $1\text{m}^2$	1 일	50
		기타의 용도			100
	아 취	도로횡단	표시면적 $1\text{m}^2$	1 년	30,000
		기 타			15,000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text{m}^2$	1 년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 를 곱한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 를 곱한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 를 곱한금액
		진 입 로			토지가격에 0.025 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금액
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text{m}^2$	1 년	토지가격에 0.04 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 실, 통로 기타 이하 유사한 것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5 를 곱한금액

	건 측 물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m <sup>2</sup>	1 년	토지가격에 0.017 를 곱한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 를 곱한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 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 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 가로판매대	점용면적 1 m <sup>2</sup>	1 년	토지가격에 0.01 를 곱한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굴착부분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m <sup>2</sup>	1 일	100			
	기 타		1 년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밀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m <sup>2</sup>	1 년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 9호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점용면적 1m <sup>2</sup>	1 년	토지가격에 0.005 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금액			

## ※ 비고

-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 면적등이  $1m^2$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 길이, 표시 면적등이  $1m^2$  또는  $1m$ 미만인 경우에는  $1m^2$  또는  $1m$ 로 산정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표시부분의 합계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10원단위로 끊어서 부과한다.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예 : 1,445원 → 1,400원, 1,995원 → 1,950원)
6. 위표의 제1호에는 수도, 하수도, 가스, 송유, 송열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증 관시설이 아닌 점용물을 포함한다.
7. 위표의 제3호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위표의 제6호에는 다른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제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전주, 전주와 유사한것, 공중전화” 이외의 점용물
- 나. 제4호, 제5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 다.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이외의 점용물
- 라.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일시 점용한것” 이외의 점용물
- 마. 제10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 이외의 점용물
9. 위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4를 각각 감액한다.

10. 위표증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 【별표 2】

## 점용료조정산식 (제7조 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 부 할 점 용 료
10%이상 20%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10}】
20%이상 50%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10}】
50%이상 100%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100%이상 200%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10}】
200%이상 500%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 이상	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25/100+(증가율-500/100)×5/1,000}】

## 【 7 】 양주군건축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4. 3. 3.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법 제7조 및 동시행령 제7조제1항, 양주군건축조례 제5조제1항제8호로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대상 건축물로 정하여 시행하였으나
-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3호로 주택건설 촉진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32조의4가